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77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안○○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23. 4.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66,452,4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667,020원
(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4. 7. 30.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자본금 50,000,000원), 원고는 2009. 9. 14.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2. 31. C,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합계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주식취득으로 배우자 E이 소유하고 있던 4,000주와 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그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 4. 3. 원고에게 위 주식취득일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2,405,136,6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66,452,470원,¹⁾ 농어촌특별세 5,667,020원²⁾ 합계 72,119,4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4. 6.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취득세 48,102,730원(= 과세표준 2,405,136,664원 × 세율 2%. 10원 미만 버림) + 일반무신고가산세 9,620,540원 + 납부지연가산세 8,729,200원

2) 농어촌특별세 4,810,270원(= 취득세액 48,102,730원 × 10%. 10원 미만 버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참조) + 납부지연가산세 856,750원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단독으로 납부한 1인 주주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F, G, H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 그 후 위 명의수탁자들의 개인 사정으로 F 명의의 주식 3,000주는 C에게, G 명의의 주식 3,000주는 D에게 각 양수도 형식으로 다시 명의신탁을 하였고, H 명의의 1,000주는 원고의 배우자 E에게 양수도 형식으로 반환되었다. 원고가 C,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위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실질 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법(2020. 12. 1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대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義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義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義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



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를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 D은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2020. 12. 31. 이전부터 C, D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2020. 12. 31. C,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2006. 9. 14. 원고와 C, 원고와 D 사이에 각 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문구나 인영 등과 관련하여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는 명의신탁계약서에 C의 주소로 기재된 '○○○ ○구 I'에는 위 명의신탁계약서 작성 당시 다세대주택이 있었으나 C가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위 명의신탁계약서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명의신탁계약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문제되기 전인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34021호로 C, D에 대하여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3. 무변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4. 10.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8.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7713호로 C, D에 대하여 재차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3. 27. 무변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9. 4.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C, D이 두 차례의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실제로 원고가 C,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유력한 간접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회사가 2004. 7. 30. 설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전날인 2004. 7. 29.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자본금과 동일한 액수인 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 2004. 8. 5.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4) 2018. 5. 25.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대한 중간배당을 결의하였고, 2018. 6. 25.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C, D에게 배당금을 입금하



였는데, 이들은 배당금을 수령한 즉시 그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5) 한편, C, 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박○○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0. 12. 1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 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